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45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김동아·김 윤·김문수

황운하 · 김교흥 · 차지호

이정문 • 황명선 • 박정혁

박균택 • 허성무 • 정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남성의 경우 태아 정기건강검진 허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반 진료 시 자신의 연차 또는 반차를 활용하려 해도 직장 내 분위기, 사회적 인식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음.

이에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u>여성</u>	등) ① <u>여성근로자</u>		
<u>근로자가</u> 「모자보건법」 제10	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	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			
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			
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